

배포 2024. 11. 25.(월)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4. 11. 26.(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 2024. 11. 26.(화) 국무회의 종료 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영 중인 전공대학에 대한 교지 확보 기준 적용 완화 및 전공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근거 마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의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참여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공대학 현황: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 운영 중인 전공대학에 대한 교지 확보 기준 폐지 >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전공대학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2023)으로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일반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도 폐지됨

< 전공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전공대학은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전공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전공대학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협력 등을 활용하여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이운식 (044-203-6907)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044-203-6384)
			주무관 김유진 (044-203-6385)

붙임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교지 확보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23. ~ 7.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 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별표 3의2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3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산업체 위탁교육)</u> <u>①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u>

붙임2**「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 업 교 육 진 흥 및
산 학 연 협 력 촉 진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교육과 산학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
되는 평생교육시설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산학협력을 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23. ~ 7.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제8조제1항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모집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시모집은 제외한다)”를 “모집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시모집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본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설·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제30조의2에 따른다.

제3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에 따른 교사 안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 안

제48조 중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를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① ----- ----- ----- ----- -----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 ----- ----- ----- ----- -----.

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계약학과등의 학생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동일한 계약학과등 내에서 산업체등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모집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시모집은 제외한다)에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모집단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생 략)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2. (생 략)

⑥ ~ ⑫ (생 략)

제8조의2(계약정원의 운영) ① (생 략)

② 계약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시모집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⑤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 2. (현행과 같음)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계약정원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3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안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운

-----.

제11조(시설·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5조 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제30조의2에 따른다.

제3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

-----.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호에 따른 교사 안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u>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u> ② (생 략) 제48조(협력연구소) <u>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u>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포함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교지 안</u>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협력연구소) <u>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를 포함한다)---</u> ----- ----- ----- ----- ----- ----- ---
--	---